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

제정 2012. 4. 18

제1조(목적)

정보통신정책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)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재산 도난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며, 화재 및 기타 재난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기 위함이다.

제2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)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사무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,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,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.

나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사무국 총무팀에서 수행하며, 보호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

	이 름	직 위	소 속	연락처
보호책임자	곽성근	국장	사무국	02-570-4410

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자료에 대한 열람은 원장, 부원장, 사무국장, 총무팀장에 한하며, 단 사안에 따라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원장이 지정한다.

2. 연구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및 촬영범위,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다음과 같다.

가. 연구원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8대이며 촬영범위는 정문입구, 외부주차장 입구, 후문입구, 1층현관로비, 지하1층로비, 지하주차장 출구, 지하주차장 입구, 지하주차장 통로 등이다.

나. 연구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안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총 8개를 설치 및 운영한다.

다.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장소는 현관 안내데스크이며, 녹화된 화상정보의

보관기간은 약 1개월(30일)이다.

라. 화상정보의 녹화, 재생 및 삭제는 현관 안내데스크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을 통해 구현되며, 녹화되는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책임자 및 허가인원 외 출입을 통제한다.

마. 현관 안내데스크 옆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,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.

3. 보호구역에서 카메라 내장 휴대폰,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지 및 촬영을 금지한다.

제3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
1.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.

2.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장에게 [별지 1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전자문서 포함)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.

3.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되어야 한다.

4.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.

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5.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제4조(적용배제)

본 방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연구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지 않는다.

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사무의 위탁)

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구분	수탁업체	담당자	연락처	비고
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·DVR	디엔에스티(주)	유인현	070-7101-5364	1회/월 점검

